**[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타 대학 학생회칙 ]**

**<가천대학교>**

83 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의 궐위 기간동안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84 조(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준하는 업무권한을 갖는다.

85 조(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86 조(임기)

1)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1 월 1 일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로 한다.

2)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부)위원장의 의사를 고려 후, 중운위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임기는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다시 한번 당해 연도 중운위에서 비상대책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기는 선출 일로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4) 이 또한 무산될 시 현 중앙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겸직하고 그중 대표자 1 명을 선출한다.

87 조(선출)

1) 비상대책(부)위원장의 선출은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다음 연도 중운위가 함께 통합 중운위 회의를 진행하여 어느 연도의 중운위에서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할지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2)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잔여 학기가 1 개 학기 이상인 자로 선출한다.

3) 비상대책(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을 따로 선출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경선일 경우, 당선자는 총 의결권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4)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다시 한 번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은 따로 선출하며, 중운위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경선일 경우, 당선자는 총 의결 권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88 조(통합중앙운영위원회)

1) 통합 중운위의 회원은 당해 연도 중운위와 다음 연도 중운위로 구성되며 동일하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또한 다음 연도 중운위는 통합 중운위에 한하여 임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의결권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통합 중운위의 회원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언론출판협의회 부의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학생회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총학생회 각 집행위원,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언론출판협의회 부의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학생회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부학생회장은 보고권과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3) 각 단과대 학생회장, 부재 시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이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4) 통합중운위 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의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5) 통합중운위는 선거가 무산된 날로부터 10 일 내에 실시해야 하며,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건국대학교>**

제76조 (지위 및 구성)

1.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총집행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선거가 무산된 후 7일 이내에 선출한다.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 중 1인을 재정담당자로 구성한다.

제77조(위원장)

① 당해 연도 중운위에서 선출된 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단, 당해 연도에 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며 비상대책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8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의 소집권을 가지며 각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권만 인정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칙개정 건의 및 참가 협의를 위한 참가권을 갖는다.

⑤ 전학대회 및 중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진행한다.

⑥ 경감된 총학생회비 집행 권한을 가지며 매 학기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비 경감 비율을 산정하며 경감된 금액은 집행부가 구성된 전 단위로 배분한다(단, 경감 비율은 10% 이상 40% 이하 내에서 산정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는 재정담당자의 전학대회 인준 이후 총학생회비 집행 권한을 가진다(단, 재정담당자의 전학대회 인준 이전에는 중운위 승인을 통해 일시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⑧ 매월 중운위를 통한 예·결산안 승인 의무를 지닌다(단, 승인 이후 3일 이내에 SNS를 통해 공고한다).

⑨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79조 (임기) 비대위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단, 재·보궐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시에는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0조 (선출 공고) 선출 공고는 비대위 위원장단 선출 즉시하고 선출 과정, 선출 결과(선출자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대학교>**

제168조 (목적)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가 무산되거나 총학생회장단의 사고나 궐위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 총학생회의 행정상 공백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169조 (권한과 범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세칙」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와 동격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170조 (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공백 상황에서 행정 제반 업무를 비롯한 이 회의 운영 및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171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세칙」에서 정하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중앙운영위원회 업무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제172조 (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173조 (의결정족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4조 (의결사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임시중앙집행부의 구성

2.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4.「중앙운영위원회세칙」에서 지정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동국대학교>**

제3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각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가 무산되거나 정, 부 대표자 모두 궐위 시, 해당 기구의 임시 운영 집행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이다

제4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된다.

1. 해당 학생자치기구 선거의 무산

2. 해당 학생자치기구 정 부 대표자 모두의 탄핵 ･

3. 기타 그에 준하는 궐위 상태

② 전항 1호의 경우 해당 단위의 대표자는 비대위 구성과 그 사유를 담은 경위서를 공포하고 정기 선거에서 당선된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대의원회의 경우 중앙위원)들을 소집하여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③ 전항 2,3호의 경우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대의원회의 경우 중앙위원)들은 비대위 구성과 그 사유를 담은 경위서를 공포하고 운영위원회 혹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④ 비대위는 당해연도 운영위원(대의원회의 경우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 (업무 및 권한)

비대위는 해당 단위 운영위원회(대의원회의 경우 중앙위원회)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해산) 비대위는 해당 단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면 당연 해산한다.

\*\*비상대책위원장

제7조 (선출)

① 중앙단위 및 단과대학 단위의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장이라 한다)은 해당 단위 대의원회의장이 맡는다.

② 대의원회 의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비대위장 선임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 중 인을 호선한다.

③ 비상대책위원 중 비대위장 선임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총학생회 회원 중 공개 모집을 실시하며 모집된 인원 중 비상대책위원 과반 득표자를 비대위장으로 선출한다. (단, 공개 모집을 실시할 경우 준회원도 가능하다.)

④ 학부 및 학과 단위의 경우 비대위장은 해당 단위 대의원 중 1인을 호선하고 대의원 중 비대위장 선임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전항을 따른다.

⑤ 비대위장은 7일 이내에 재 휴학 증명서를 포함하여 각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위) 비대위장은 해당 학생자치기구 대표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9조 (업무 및 지위)

① 해당 학생자치기구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② 본회 어떤 회의체에서도 비대위장 직책에 의한 의결권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③ 비대위 구성 시 적절한 시기에 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회의 경우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비대위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회의가 사수되지 않을 시 비대위 각 회의체의 지위와 업무 및 권한은 유지되며, 예산 집행권은 정지된다.)

\*\*\*집행부

제10조 (지위) 비대위 집행부는 해당 단위 집행부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11조 (구성) 비대위장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집행부 구성이 어려울 경우, 비대위장이 본래 장을 맡은 단위의 집행부에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해당 단위 집행부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부칙

제1조 (세칙의 개정)

① 본 세칙의 개정안 및 폐지안은 운영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혹은 총학생회 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발의한다.

② 본 세칙의 개정안 및 폐지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 (유권해석) 본 시행세칙의 유권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서강대학교>**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궐위 시 궐위 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만이 선출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2. 총학생회장단 양자의 사망, 탄핵, 사퇴 등 유고 상황이 선거 종료일 이후부터 10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할 경우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지 못한 경우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0000(해당 년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당해 12월 1일부로 다음 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89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설립 사유가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단, 가을학기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당해 학기의 모든 학부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가을학기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예정자 전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후보자 선정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원장 선출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⑥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하며, 후보자 선정 회의와 위원장 선출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문구수정 2018. 12. 26. ]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체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 방식·투표 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체 공지

제9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궐위 시 궐위 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만이 선출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2. 총학생회장단 양자의 사망, 탄핵, 사퇴 등 유고 상황이 선거 종료일 이후부터 10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할 경우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지 못한 경우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0000(해당 년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당해 12월 1일부로 다음 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89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설립 사유가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가을학기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당해 학기의 모든 학부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가을학기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예정자 전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후보자 선정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원장 선출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⑥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하며, 후보자 선정 회의와 위원장 선출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문구수정 2018. 12. 26. ]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체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 방식·투표 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체 공지

제9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인 1조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만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본 회의 회원 중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15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가을학기 선거 무산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당해 학기의 모든 학부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후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전학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이 부결될 경우,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91조 【비상대책위원】

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되면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소속 단위에서 임명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비상대책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제92조 【해체】

1.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와 동시에 해체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단,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미선, 재선거 등의 사유로 인해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 무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일 뒤 해체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인 1조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만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본 회의 회원 중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15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가을학기 선거 무산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당해 학기의 모든 학부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후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전학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이 부결될 경우,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제65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의 임기 종료일부터 권한대행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67조[선출]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며 2/3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중앙운영위원인 자 혹은 현직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의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제68조[업무] ①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각 기구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의 논의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편성

4.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각 기구와의 교섭

5. 세칙 제정⦁개정안의 입안

6. 집행부 구성원의 인선 등 관련 업무의 지속

7. 그 밖의 집행부 운영의 지속에 필요한 사항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전항 3호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5호의 세칙 재정, 개정안의 입안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계획안, 예산안 기타 의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으로 의제하여 의결한다.

제69조[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총학생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제70조[사퇴] 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원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퇴를 인정한다.

**<성균관대학교>**

제9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즉시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93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총학생회장단이 궐위·탄핵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4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가 무

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선거가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차기 연

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각 회의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2.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한 경우,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과정 (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5조 (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제96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

1.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위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집행위원 중 1인 이상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7조 (비상대책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선출된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8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양 캠퍼스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총회, 연학대회, 연석중운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된다.

**<인하대학교>**

**\*임시자치기구**

제129조 (성립) 임시자치기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1. 자치기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임기 중 자치기구의 대표와 부대표 모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제130조 (지위) 임시자치기구는 해당 자치기구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131조 (구성) 임시자치기구는 해당 단위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2조 (목적) 제12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자치기구가 성립될 때 까지 해당 자치기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3조 (조직)

1. 연합의장은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들이 호선한, 운영위원들 중 1인으로 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단위의 직선간부 중 1인으로 한다.

제134조 (회칙) 임시자치기구의 회칙은 해당 자치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제135조 (업무 및 권한) 임시자치기구의 업무 및 권한은 해당 자치기구의 업무 및 권한에 준한다.

제136조 (재정) 임시자치기구의 재정은 학생회비 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13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궐위될 경우 궐위 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28제114조(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권한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5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총학생회장단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2.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궐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30일이 넘지 않을 경우

3.총학생회장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30일이 넘지 않을 경우

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제116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15조(구성)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각 단과대학, 독립학부, 동아리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도 구성에 포함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차 회의에서 다음에 의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⑤ 제1, 2차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이 한다.

⑥ 제1, 2차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1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위원회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본회의 정회원 및 휴학생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2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될 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18조(비상대책위원)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되면 그 즉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소속 단위에서 임명된 1인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1.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비상대책위원은 제1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19조(사퇴)

1.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사퇴를 해야 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사퇴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0조 (탄핵소추)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은 비상대책위원장ㆍ부비상대책위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1. 제120조 1항에 의해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발의될 수 있으며 연서는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3분의 2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분의 1 연서에 의한 발의

3. 본회 정회원 20분의 1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③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발의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대표 발의자

④ 제120조 1항에 의해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결될 수 없다.

⑤ 제120조 1항에 의해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탄핵 소추에 대한 모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피소추인의 직무를 정지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되면 그 즉시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일시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일시는 탄핵 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제46조(소집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다.

⑧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

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 소추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 소추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121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무산될 경우 총학생회칙 제116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현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즉시 종료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소집한다

**<한양대학교>**

제57조(설치)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72시간 이내에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선거 무산 공고 직후 10일 이내에 차기 년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모두가 궐위한 시점에서 해당 총학생회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3.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모두가 탄핵된 시점에서 해당 총학생회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8조(지위)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는 총학생회장단의 지위에 준한다.

제59조(구성)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1항에 의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2인을 각각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겸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은 호선 이후에 소집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을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라 칭한다.

제60조(직무 및 권한)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총학생회 정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며,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궐위·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을 대행한다. 단,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 중앙특별위원회를 통할한다.

⑦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중앙운영위원은 각 소속 단위에서 한 명 이상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⑧ 기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1조(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로 전환한다.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설치기간 동안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장에 준한다.

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중앙집행위원에 준한다

**<홍익대학교>**

제105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106조 【권한】 비상대책위원장단과 비상대책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진다.

107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당해 연도 총선거, 재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아 궐위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08조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당선자 공고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해 연도 정규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제109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총선거, 재선거 이후 제92조 제2항에 해당될 때 구성하며 비상대책 설립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해당 사항의 공고는 재선거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진행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정규 2학기 종강일까지 설립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 간선 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들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

하고 24시간 이후 해산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과정 (위원장 선출 투표 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제110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서 선출 이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1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동일하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집행부를 임명할 수 있다.